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301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이만희 · 서천호 · 엄태영
김기웅 · 진종오 · 구자근
김상훈 · 강선영 · 이성권
조은희 · 김미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차산업의 육성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차산업법’)에서는 차문화의 구성요소로 다도(茶道)를 명시하고 있으나, 다례(茶禮)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통 예절로서의 차문화의 핵심 가치를 포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도’는 주로 차를 마시는 방법과 정신적 수양에 중점을 둔 개념인 반면, ‘다례’는 의례적 형식과 예법을 중심으로 한 문화로 그 범주와 성격이 다르므로 차문화 정의에 다례를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례의 계승·발전에 대하여도 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전시관 또는 차문화체험관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및 제18조제1항 신설 등).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다도”를 “다도·다례”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 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차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평가, 저장, 판매, 이용, <u>다도</u>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발전되어 온 유형·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u>다도·다례</u> ----- ----- -----.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신 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홍보전시관 등 설치·운영의 지원) ①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차문화 교육을 위하여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u>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